

제 526 호

1975.10.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6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525 호	서울특별시 사무본장규칙중 개정규칙	3
제 1526 호	서울특별시외국인관광객에대한 유통음식제 불균일과색에관한 조례시행규칙	4
○ 고 시			
제 16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타수도) 일부변경· 신설 및 지적승인	8
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9
제 162 호	" "	10
제 16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11
제 164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및일부변경	11
제 165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	12
제 166 호	서울특별시관광운수국운수 3 과공통계 (차량등록일)위차고서	12
제 167 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13
제 168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3
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14
제 170 호	1975년도제 2 회추가경정예산고시	15
제 171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지적승인	1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035

	제 172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변경및 지적승인..... 17	17
◎	공 고	제 173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 17	17
	제 23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7	17
	제 23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0	20
	제 239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23	23
	제 241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완료공고..... 24	24
	제 246 호	화재경계지구 지정해제..... 24	24
	제 247 호	강남구청장 공인공고..... 25	25
	제 248 호	강남구청출장소공인공고..... 25	25
	제 249 호	성동구청장 (성동구영동출장소와 성동구청출장소 출장소사용공인) 공인폐인공고..... 26	26
	제 250 호	성동구 영동출장소장과 성동구청출장소장 공인 폐인공고..... 27	27
	제 251 호	제 1 회 관광호텔 종업원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8	28
	제 2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31	31
◎	예 규	제 309 호 서울특별시 농가대여양곡 결손처분 사무처리요령..... 36	36
	제 310 호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 44	44
◎	사 령 47	47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인
1975년 10월 16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25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9 조중 제 2 항제 2 호 바목및 아목
을 각각 삭제한다.

제 26 조중 제 2 항제 3 호 가목을 삭제
한다.

제 34 조중 제 2 항제 3 호 나목및 동항
제 4 호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 65 조중 제 1 항 “ 계량계 ” 및
“ 계량계정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 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중 제 2 항제 1 호 라목을 사목으
로 하고,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 2 호

를 삭제하고 제 3 호를 제 2 호로
한다.

라. 초가지붕계량

마. 불량전분의 계량

바. 주인허가 및 디화단장

제 70 조중 제 1 항 “ 외지도 2 계 ” 를
“ 지도 2 계와 등록계 ” 로 하고,
“ 지도 2 계장 ” 다음에 “ 과등록계장 ”
을 삽입하되, 동조중 제 2 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계

가.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설정및 해제)

등록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신규, 계속, 예비)

검사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등록이관 (진출, 전입)

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체증명 발급

마. 자동차임시운행에 관한 사항

바. 기타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사. 수순동원자원 (자가용, 관용)

조사관리및 능력판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10월 16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26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하 " 조례 "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영수증교부)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경감신청) 조례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의 경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5 일까

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경감신청서에 별지 제 3 호서식의 알선업체의 외국인관광객 알선확인서 또는 수수로지불 영수증 (정산서) 사본

2. 조례 제 2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감신청서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영수증 정본

제 4 조 (대상자확인) 구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증빙을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이때에 전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상의 서명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신고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안내판게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소에는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기재요령과 감면하는 뜻을 기재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 호서식>

요금청구 또는 영수증 Bill or Receipt

일련번호 No

영업장		<input type="checkbox"/> 제 1 종장소 <input type="checkbox"/> 제 2 종장소	
객실 또는 식탁번호 Room or Table No	행위 인원 No of Person	일 자 Date	
품 명 Item	가격 Price	수량 Q.T.Y	금 액 Amount
소 계 Sub-Total			
유용음식세 Tax on Amusements, Food & Drink			
방 위 세 Defense Tax			
합 계 Grand Total			
국 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입국일자 Date of Entry			
성 명 Name	서 명 Signature		
면세를 위하여 상기란을 기입하십시오 Please in the above for the Exemption of the Tax			
1% \times 262 = (특급인쇄 용지 349/매)			
(주) 1. 이 영수증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용음식행위시에 사용한다. 2. 3매를 복사용으로 한다. 3. 유용음식세 경감신고서 1매를 첨부한다.			

<p><별지 제 3 호 서식></p> <p>외국관광객알선확인서</p>					
<p>영업장소계지</p>		<p>●</p>			
<p>특별징수의무자</p>		<p>우</p>		<p>호</p>	
<p>확 인 내 용</p>					
<p>행위일자</p>	<p>단체명</p>	<p>행위인원</p>	<p>요금영수증번호</p>	<p>행위요금</p>	<p>비고</p>
<p>위와같이 상기업소에 대하여 외국관광객을 알선하여 수었음을 서울특별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폐시행규칙 제 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함.</p>					
<p>년 월 일</p>					
<p>○ ○ 어 행 사</p>					

0038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및 하수도)
일부변경신설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신설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하수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10.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조서(별첨)

나. 하수도 결정조서(별첨)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6m	340m	신당302-4	신당 307-5	신당천 하천복개분
	"	"	"	6	578	신당 386-8	신당 381-8	"
	"	"	"	6	582	대로 1-13	대로 3-4	장위지역 하천복개분
	"	"	"	6	454	대로 3-4	중로 2-68	"
	"	"	"	6	262	중로 2-68	중로 1-9	"
	"	"	"	6	20	중로 1-9	장위 212-34	현황에 맞추어 일부 조정
	"	"	"	6	40	중로 1-9	장위 284-2	하천복개분
기정	"	"		6	536	대로 1-13	대로 3-4	
변경	폐지	"	"	6	246	장위 270-4	장위 273 앞	현황에 맞추어 일부 구간 폐지
				6	125	장위 270-32	대로 3-4	현황에 맞추어 조정
"	"	"	"	6	50	중로 2-68	장위 102-1	"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특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배 지	소토	3		6M	20 M	중토 1-9	장위 212-30	현황에 맞추어 조정
신 설	"	1		10	140	월계 46-2	월계 41-4	신곡교 진입로
기 정	"	"		10	320	중계 411-2	중계 263	
변 경	"	"		10	332	"	"	현황에 맞추어 일부 위치 변경
신 설	"	3		6	200	신길동 356	신길동 374	예정선 확정

하수도 결정조서

명칭	구분	특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하수도	압 기	6 M	938	상동구동화극장앞	약수동로터리	신당천 복개공사
"	"	"	1,576	염평중상교앞	우이천 하류 버스 농점	장위지역 복개공사
"	"	1.2	336	수유동445-37	한신국민학교앞	수유지역 하수도공사
"	"	2.0-3.0	795	수유동502-1	수유 117-2	"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 호(75.1.30)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시민회관 관리과
에 비치하여 토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5. 10. 16.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세종로동 81번지 - 도병동 104번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별지구내 도시 계획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 규모 : B = 6미터 L = 115미터</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5.10.1. - 75.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p>	<p>제25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 부고시 제 123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10. 16. 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p>	<p>1. 사업시행의 위치 : 궁정동 11-3 ~ 궁정동 37-1 간</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궁정동 - 표자동 간 도로개설공사</p> <p>3. 사업 규모 : B = 25미터 L = 260미터</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5.9. - 76.11.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 조서</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p>		<p>(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시흥군 광명리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10.15 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조서</p>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광명공업전수학교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산 58	14,837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광명리출장소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p> <p>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및 일부 변경</p> <p>1. 건설부고시 제 146 호(75.9.3)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74.9.25)로 지적승인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p>		<p>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및 일부 변경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기민복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10.15 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조서</p>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상업지역	서대문구 정동15번지 일대	4,216	

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일부변경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서대문구 정동15번지 일대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일대	13,200	7,247		
<p>※도면생략(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5 호</p> <p>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58 호(75.4.26)로 지적고시한 바있는 상업지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가)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조서</p>		<p>4)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10.15.</p> <p>서울특별시장</p>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중구회계로 일부지역	6,282,600	8,552	6,274,048	
<p>※도면생략(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6 호</p> <p>서울특별시관광운수국운수3과 등록제(차량등록실)위치고시</p> <p>서울특별시관광운수국 운수3과 등록제(차량등록실)위치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75.10.20.</p> <p>서울특별시장</p> <p>다</p> <p>음</p> <p>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산120번지 (한국트럭터미날주식회사)</p> <p>업무개시일 : 75.10.20.</p> <p>담당업무 : 차량등록및 검사에 관한업무.</p>			

<p>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p> <p>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146 호(75.9.3)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가.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적승인조서</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10.17</p> <p>서울특별시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녹지명</th> <th>위치</th> <th>면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이촌동녹지</td> <td>용산구 이촌동 302-87</td> <td>8,117</td> <td></td> </tr> <tr> <td>·</td> <td>경동 녹지</td> <td>중구 경동 15번지일대</td> <td>3,640</td> <td></td> </tr> <tr> <td>·</td> <td>장안평녹지</td> <td>성동구 군자동 205번지일대</td> <td>344,006</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녹지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이촌동녹지	용산구 이촌동 302-87	8,117		·	경동 녹지	중구 경동 15번지일대	3,640		·	장안평녹지	성동구 군자동 205번지일대	344,006		
구분	녹지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이촌동녹지	용산구 이촌동 302-87	8,117																		
·	경동 녹지	중구 경동 15번지일대	3,640																		
·	장안평녹지	성동구 군자동 205번지일대	344,006																		
<p>※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상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서울특별시고시제 168 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465 호(71.8.6) 및 제 146 호(75.9.3)로 결정 일부 변경된 도시계획공원(삼능 및 봉천공원)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0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위임규정</p>	<p>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10.17</p> <p>서울특별시장</p>																				

가. 결정 및 일부 변경된 공원지적 승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삼농공원	강남구 삼청동	183,796	(중) 53,536	242,272
봉천공원	관악구 봉천동	636,800		636,80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1호선의 차고 및 인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10. 18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명 칭	위 치	폭	연 장	면 적	비 고
1호선인입선	용두동 75-12 ~ 답십리동 525	9.6m	1,105m		총연장 2,895m
지상정차장	답십리동 525	20m	210m		증기설문
차량기지	군자동 205에서 981일대 송정동 74에서 205일대 답십리동 502, 516 및 520, 523 일대			180,000㎡	1,580m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건설본부 및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70 호

1975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고시

1975년도 제 2 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 . 10 . 1 .

서울특별시장 구 가 훈

다 음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162,497,811	천원
일반회계	99,390,228	"
특별회계	63,107,583	"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10,705,886	"
토지구획정리비	12,199,000	"
하수처리장비	1,589,060	"
건설자재생산비	1,402,268	"
유로도로비	942,441	"
시민회관비	2,374,604	"
청 소 비	5,316,302	"
재해구호비	104,274	"
수도사업	17,568,390	"
지하철운수사업	10,905,358	"

<p>◎서울특별시고시제 171호</p> <p>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 시설조서 및 지적</p>	<p>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10. 2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시 장 (성동지하상가)	중구황학동 370-1의 2필	5,050	신 설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중구청에 보관

<p>◎서울특별시고시제 172호</p> <p>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34호(73.11.15)의 규정에</p> <p>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p>	<p>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10. 2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해 제	운동장(정구장)	용산구이촌동 302의 48호	1,227㎡	해 제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73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제 122호(74.8.26)로 지적고시한 바 있는 상업지역 일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 2와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상도지역일부변경지적승인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년 직 (㎡)		
		창 초	변 경	변 경 후
상업지역	중구동소문동 21-1	5,274,048	183	6,274,231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2948호(66.12.17)로 고시된 삼양로(가오교~4.19공원입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10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삼양로

<p>(가오교~4.19공원입구간) 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폭: 20미터 연장: 830미터</p> <p>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1975. 9. 15 ~ 1976. 12. 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수유동				279-	도	1	수유동 279-1	최상필	
2	"				278-16	"	2	중구소공동45	대환주 백홍사	
3	"				278-17	"	3	수유동 280-23	장광진	
4	"				277-8	대	236	중구팔동2가83-이정은		
5	"				320-2	전	442	수유동 38	허준	
6	"				321-2	"	198	"	허준	
7	"				318-9	대	39	돈암동294-28	최순근	
8	"				317-17	"	21	"	"	
9	"				316-6	"	46	수유동327-1	이병학	
10	"				316-7	도	8	"	"	
11	"				316-8	대	80	"	"	
12	"				330-2	전	2	안암동 41-8	강주희	
13	"				331-4	답	163	수유동195	김호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사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4	수유동				332-8	전	8	청운동 15-13	조계순	
15	"				333-2	대	76	수유동 333	이복순	
16	"				334-37	"	39	수유동 341-D	송광호	
17	"				338-36	"	51	수유동 338-6	기울규	
18	"				338-37	"	41	원효로2가213	송영걸	
19	"				338-38	"	73	미아동 534-16	원남갈	
20	"				341-19	도	16	수유동 245	송광호	
21	"				340-6	전	24	수유동 359	박영근	
22	"				339-4	대	2	울지로3가291	김청자	
23	"				372-13	"	7	서대문냉천동171	광명연	
24	"				372-5	"	69	삼동구삼남동181	최필동 외3인	
25	"				370-1	"	25	수유동 372	권광택	
26	"				338-39	"	3	수유동 343-26	강선동	
27	"				372-16	"	4	수유동 45	박남득	
28	"				370-7	"	3	수유동 345-2	김애원	
29	"				370-8	"	2	수유동 370-4	신승현	
30	"				367-6	"	5	수유동 367-1	대일산업 주식회사	
31	"				370-3	"	67	수유동 370-3	이태준	
32	"				381-4	"	30	수유동 381-2	박준현	
33	"				383-3	"	37	수유동 45	박창운	
34	"				385-9	"	46	수유동 385-1	서번업	
35	"				382	전	2		김홍근	
36	"				339-1	"	29	수유동 371	손수만	
37	"				340-1	대	137	수유동 245	송광호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8	수유동				341-1	대	72	수유동 245	송광호
39	"				332-7	전	48	청운동 15 - 13	조지순
40	"				277-38	대	186	종로구 전지동 68-4	주식회사한국 신락은행
41	"				285-2	전	3	성북동 83-17	제영철
42	"				284-1	전	3	수유동 381	박남득
43	"				278-14	대	8	수유동 산2	임남현
44	"				278-13	"	30	가평군하면현리 263	최필순
45	"				278-12	"	25	수유동 278-1	안정란
46	"				278-15	"	3		국유지
47	"				278-10	"	20		"
48	"				392-21	전	52	중정동 77-2, 돈의동 125-3	박분상 홍부동
계	48필지						2,488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2948 호 (66.6.21)
로 고시된 4.19 공원 1 입구도로
경비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
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10

서울특별시장

<p><공 략 개 요></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동</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4.19 공원 입구 도로정비공사</p> <p>3. 사업의 규모 : 폭- 8 ~ 10 m 연장- 1,355 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5.9.20 ~ 76.12.2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 첨</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수유동				280-55	대	12	동송동 4-8	김현자의2
2	"				-56	"	18	"	"
3	"				-57	"	11	수유동산 1	이 우 보
4	"				-58	"	11	수유동 280-11	김 계 준
5	"				-59	"	11	" 산 1	용 세 현
6	"				-60	"	10	" 279-208	최 동 철
7	"				279-291	도	212	인천시신흥동2가54	장 수 근
8	"				535-284	대	25	계기동 226	이 달 우
9	"				-245	"	21	수유동 535-73	박 분 현
10	"				-246	"	22	" 535-74	최 종 현
11	"				-247	"	25	송로 2 가 23	김 학 순
12	"				570-34	"	9	" 570	김 광 권
13	"				568-44	"	14	" 568-28	장 동 윤
14	"				-45	"	1	" 568-17	서 상 준
15	"				-46	"	0.6	" 568-8	박 외 덕
16	"				-2	"	18	" 560-2	안 동 하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7	수유동				568-15	대	1.1	수유동 560	안 주 순
18	"				-5	"	5.4	"	"
19	"				-49	"	20	"	"
20	"				-50	"	17	수유동 568-27	이 석 규
21	"				-31	잡	10	신당동 573-10	박 정 순
22	"				-52	대	30	" 52-82	조 용 구
23	"				-53	"	24	"	"
24	"				-54	"	19	수유동산 38	분 면 호
25	"				567-53	"	10	신당동 52-82	조 용 구
26	"				563-59	잡	16	하월곡동 68-2	안 수 명
27	"				-61	"	0.8	"	"
28	"				-4	대	81.6	수유동 349	오 봉 백
29	"				-64	"	0.6	" 563-33	이 성 용
30	"				-65	"	17	" 563	최 용 덕
31	"				-66	"	24	"	"
32	"				-67	"	46	명륜동1가 88-6	김 동 지
33	"				-68	잡	19	수유동 563	김 기 원
34	"				-69	대	58	" 280-17	이 상 언
35	"				-70	잡	34	하월곡동 68-2	안 수 명
36	"				-71	"	23	"	"
37	"				-72	"	14	수유동 563-11	서 영 식
38	"				-56	"	2	신당동 73-10	박 정 순
39	"				-11	전	3	녹번동 118-1	박 명 선
40	"				-12	"	2	"	"
41	"				-6	대	36	수유동 563	김 기 원

순위	소재지	분할건표시			분할부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수 소	성 명
42	수유동				산21-12	임	541		고본정일
43	"				산75-7	"	573	안암동 482-21	권원식
44	"				산75-8	"	244	신분로 2가1-121	고성일
45	"				산75-9	"	330	"	"
46	"				산35-2	"	14	수유동 32	박동국
47	"				279-279	대	37	미아동 550-35	김숙순
48	"				279-278	"	103	수유동 279-40	김원식
계	48 편지						2,781.10		

○ 서울특별시공고 제 239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로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롭한다.

1975. 10.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1지구 2공구, 2지구 4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성동구신사동 31 차 2호 외 35 필
- 다. 공람기간 : 75.10. . - 75.10. .

○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완료공사

- 1. 서울특별시고시제 45 호 (68.6.14) 고 실시계획인가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은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123 호 (72.4.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선복구정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10.1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집행지 : 시내성북구성북동산 7-7의 1번지
- 2. 사업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3. 준공면적 : 24,914 평

- 4. 사업시행지 : 시내중구장충동1가 119 이상순

- 5. 사업기간 : 착 공 : 1968. 8.14
준공예정 : 1975.10.31

- 6. 준공년월일 : 1975.10.17

- 7. 준공도면 : 별첨인중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

화재경계지구지정해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다음 지구는 소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제한다.

1975.10.16.

서울특별시장

위	치	지	구	명
동대문구답십리 3.4 동	465-545번지 일대	답십리 3.4 동	화재경계지구	
성동구마장동 405		위림불거장지대	화재경계지구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7 호

강남구청장 공인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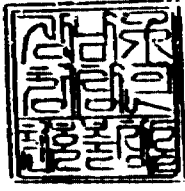

서기 1975년 10월 1일자로 설치된
강남구청장의 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0.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다 음

1. 공인의 명칭 :
가. 강남구청장인 (직인)
" (계인)
나. 강남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직인)
강남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계인)

2. 공인의 인영

강남구청장 (직인)	강남구청장 (계인)	강남 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직인)	강남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계인)
			

3. 사용개시년월일시 : 1975년 10월 1일 09:00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8 호

강남구천호출장소장공인공고

서기 1975년 10월 1일자로 설치된
강남구천호출장소장 공인을 신조하였
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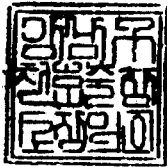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다 음

1. 공인의 명칭 :
강남구천호출장소장인 (직인)
" (계인)

2. 공인의 인영

<직 인>



<계 인>



3. 사용개시년월일시 : 75.10.1.
09:00 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249 호

성동구청장 (성동구영 동출장소
와 성동구천호출장소사용공인)
공인 배인 공고

서기 1975년 9월 30 일자로 배지된
성동구 영동출장소와 성동구 천호출
장소에서 사용하던 성동구청장공인을
다음과 같이 배지하였기 공고함.

1975. 10.

서울특별시 장 구 자 준

다 음

1. 배지된 직인명

가. 성동구청장인 (영동출장소사용인)

(직 인)

성동구청장인 (영동출장소사용인)

(계 인)

나. 성동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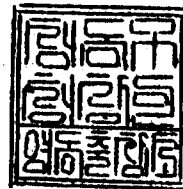
(직 인)

성동구청장인 (천호출장소사용인)

(계 인)

2. 배지된 인영

(직인) (영동출장소사용인)



(계인) (영동출장소사용인)



(직인) (천호출장소사용인)

(계인) (천호출장소사용인)



3. 폐지년월일시 1975년 9월 30일 24:00시

◎ 서울특별시 공고제 250 호

성동구영동출장소장과성동구
천호출장소장공인폐인공고

성동구 영동출장소장 공인과 성동구
천호출장소장 공인을 다음과같이 사용
폐지하였기 공고함.





서기 1975년 9월 30 일자로 폐지되

197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다 음

- 1. 폐지된 직인명 : 가. 성동구 영동출장소장인 (직 인)
- ' ' ' (계 인)
- 나. 성동구 천호출장소장인 (직 인)
- ' ' ' (계 인)

2. 폐지된 인영

성동구영동출장 소장직인	성동구영동출장소장 계인	성동구천호출장 소장직인	성동구천호출장 소장계인
			

3. 폐지년월일시 : 1975년 9월 30일 24 : 00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251 호
 계 1 회 관광호텔종업원
 자격시험합격자공고
 75년도 계 1 회 관광호텔 종업원

(지배인 제외) 자격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75. 10. 22.
 서울특별시장

75년도 계 1 회 관광호텔종업원전형합격자명단

- 서울시 -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번호	성 명
5007	최 재 민	5010	박 난 우	5011	김 인 분	5013	김 혜 영
4							
5014	하 영 애	5016	오 순 자	5018	윤 영 미	5019	유 위 번
5021	오 광 현	5025	이 화 련	5028	이 상 원	5032	한 영 원
5033	정 삼 모	5034	전 표 제	5035	김 속 화	5037	한 동 구
5039	김 정 애	5040	김 수 연	5041	허 명 희	5043	최 성 주
5048	서 완 복	5049	강 준 기	5050	이 경 란	5052	김 정 호
5053	권 현 자	5054	유 성 자	5059	손 천 독	5060	이 금 자
5063	신 형 식	5064	유 온 실	5067	이 계 석	5069	최 송 미
5070	이 성 질	5071	양 경 신	5072	김 영 복	5075	명 인 유
5076	김 요 섭	5078	안 경 희	5079	차 홍 식		

75년도 제1회관광호대졸업원일반응시합격자명단

- 서 울 시 -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4	나승준	5	최경희	7	김병권	11	안병호
16	신형길	17	박경순	18	홍대식	23	김기수
31	김종국	32	이규문	33	양두현	39	손병국
40	이종걸	41	박용구	42	손제인	44	김창근
46	이상분	49	안홍균	53	김덕용	58	김현민
59	박양규	60	안종철	62	임정식	63	이건성
65	심제석	66	유제은	63	이금영	69	이명숙
71	홍봉열	74	장세길	75	윤호돈	78	이종환
80	김휘몽	82	김창복	83	정성화	86	마울창
87	박영석	94	조한철	95	김병삼	99	조성일
101	김영숙	103	이윤화	110	김정란	113	이은숙
116	강태영	117	이영숙	118	허릴	120	백동화
121	이태경	124	이건호	125	김기관	126	김기화
127	이종일	130	장영규	139	권구태	145	박복순
149	김영순	150	양근	151	백병관	168	이대전
170	함영태	171	이덕근	173	전일근	175	김성민
180	분희영	184	최든상	185	기택용	186	실용안
189	이장진	192	박우건	196	조세구	201	장수만
204	최경철	215	김영호	216	권영태	218	이강전
222	이요환	226	최광욱	230	이안나	231	이수근
240	남포덕	241	최영수	251	신계훈	254	정용전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257	오삼덕	265	유태영	269	신병균	280	이정진
283	김진학	285	이득희	290	김미영	292	박정식
300	박부순	304	한광수	309	임병순	312	박
304	한광수	309	임병순	312	박태현	314	한창봉
316	이용구	317	김명균	318	심재용	327	김영득
335	이창도	337	이근채	339	김정룡	343	김형진
356	정재민	360	강영임	361	한주경	363	문창모
367	이우원	371	박한규	375	박균용	383	안세원
384	신광섭	385	김해근	395	김주현	398	김제식
400	구재울	407	함성걸	409	이해정	415	박원일
416	송창현	418	신화섭	424	박안순	427	신형균
430	차국종	444	이병기	446	황달현	447	황식현
449	박기호	450	박삼기	452	최명성	453	이운용
454	강태희	463	최영철	464	차준기	465	홍도영
470	배근식	471	한기전	473	유재기	476	윤호선
477	김성환	478	강범식	479	지욱	480	전상진
482	최재상	484	김운욱	492	이성복	494	김대근
495	이남봉	497	김길만	500	송현수	504	백창석
505	이영이	506	황선우	508	이숙자	509	박종분
510	홍욱희	513	오영안	518	김진	521	박영희
522	김기동	523	박봉수	524	최준호	526	김광연
531	노원애	532	함기철	537	정영진	540	엄종호
560	박진규	561	박해경	562	이용학	567	신형우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용시번호	성명
575	정현웅	579	유철규	581	노시권	584	서상일
586	최승모	587	최영철	590	이구알	592	장계숙
596	이수환	599	김판준	600	차중현	603	김광석
605	송형범	607	이상구	609	이성범	611	도순우
612	이조빈	613	전완중	616	한치일	624	임덕영
626	표정현	630	김원수	632	조성숙		

◎ 서울특별시공고제 2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

서울특별시장

공람 개요

- | | |
|--|--|
| <p>1. 건설부고시 제186호(62.12.20)로 고시된 울퉁로-중앙교교 정문 앞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p> | <p>1. 사업시행의위치: 종로구 계동</p> <p>2. 사업의종류와명칭: 울퉁로-중앙교교 정문앞간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의규모: B=6미터, L=635미터</p> <p>4. 사업의시행과: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75. 10. - 76. 11. 30.</p> <p>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p> |
|--|--|

공 사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가회동11-139	대	15	가회동 1-54	장 숙 남
2	계동 8-5	"	0.6	계 동 8-2	이 영 자
3	" 9-6	"	1.6		국 유 지
4	" 9-5	"	0.9		국 유 지
5	" 10-2	"	3.5	18	이 영 회
6	" 12-1	도로	1.7	12	배 학 주
7	" 2-184	대	4.5	2-6	송 병 철
8	" 2-185	"	1.3	1-15	김 흥 기
9	" 2-186	도로	1.7	2-57	김 원 건
10	" 19-1	대	5.4	19	박 인 태
11	" 24-2	"	3.4	24	왕 학 원
12	" 20-1	"	4.9	18	이 해 영
13	" 18-2	"	1.8		이 해 영
14	" 59-3	"	2.3		정 성 철
15	" 52-2	"	2.5	52	김 태 신
16	" 51-3	"	2.4	51	김 종 진
17	" 61-4	"	2.2	61-1	송 왕 백
18	" 62-3	"	1.8	"	김 광 섭
19	" 5-10	"	7.9	5-1	양 궁 환
20	" 51-2	"	0.1	51	추 화 실
21	" 50-2	"	1.3	50-1	홍 승 선

번호	소재지	지부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22	계동 49-2	대	0.1	56-2	박성근
23	" 44-2	"	0.9	44	이화순
24	" 133-12	"	0.3	133-10	등유권(중주인)
25	" 133-13	"	3	133-6	임희혁
26	" 132-4	"	0.4	131-2	허완행
27	" 131-4	"	1.2	"	"
28	" 131-3	"	0.3	131-1	송유섭
29	" 130-2	"	1.3	부산시 동구 좌원동 438	신현대
30	" 129-7	"	2.9	129-3	홍석계
31	" 129-6	"	0.5	129-1	목금죽
32	" 129-8	"	3.9	129-2	이종욱
33	" 127-10	"	6.4	127-3	최익순
34	" 127-11	"	1.1	127-2	서세연
35	" 121-4	"	0.9	"	"
36	" 120-6	"	0.7	120-1	조창현
37	" 120-5	"	2	"	"
38	" 120-7	"	0.8	안국동 50	"
39	" 140-84	"	0.6	140-23	유경순
40	" 63-3	"	3.8	63-2	이건계
41	" 65-3	"	1.9	67-16	한중현
42	" 67-35	"	0.2	67-31	계단법인 수녀회 노들담
43	" 67-36	"	1.8	67-24	강영욱
44	" 67-37	"	0.2	67-29	엄익용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명
45	계동 73-11	대	1.1	안국동. 73-6	박봉환	관
46	" 76-2	"	1	76	심재홍	홍
47	" 78-7	"	3.5	172	이수기	기
48	" 78-8	"	1.4	70-2	정점오	오
49	" 79-21	"	0.8		한이씨	씨
50	" 79-19	"	1.2	79-7	이상점	점
51	" 79-20	"	2.4	계 32-3	장용익	익
52	" 82-2	"	0.9	82	김수세	세
53	" 119-2	"	1.3	140-23	홍정식	식
54	" 117-2	"	5.8	117-	윤승운	운
55	" 115-2	계약	7	115	이동식	식
56	" 109-4	대	1.1	109	최익순	순
57	" 142-2	"	2.2	혜화동 20-9	남대섭	섭
58	" 116-2	계약	2.9	115	이동식	식
59	" 77-3	"	4.1	77-1	강부선	선
60	가회동 11-55	도로	0.2	26	한상억	억
61	" 11-56	"	2.0			
62	계동 4-1	"	31.3	1번지	재단법인중앙학원	
63	" 2-47	"	6.0	북다마군 북동야사상사 500	말삼부랑	랑
64	" 2-48	대	1.4		국	
65	" 78-19	도로	0.4			
66	" 128-10	"	0.8			
계 66 필지			167.3 평	사유지 162.2 평 국유지 5.1 평		

공 사 건 발 조 서

순 위	소 계 지	구 조	총 평 수	수 용 평 수	소 용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계동 2-46	목조와즙	6.8	2.0	계동 2-46	송명철	
2	" 2-49	"	7.7	1.0	" 2-49	김홍거	
3	" 2-57	"	12.11	1.0	" 2-57	김원경	
4	" 8- 5	"	10.0	0.6	" 8- 2	윤경두	
5	" 9- 1	목조 세면와즙	4.48	0.9	" 9- 1	김동목	
6	" 12- 1	목조와즙	13.21	0.7	" 12	배학주	
7	" 24	" "	30.83	1.9	" 24	왕학원	
8	" 44	"	19.04	0.5	" 44	이희순	
9	" 51- 1	"	18.0		" 51- 1	김종진	
10	" 59- 1	세부루명	7.42	1.0	" 59- 1	정성철	
11	" 61- 3	목조와즙	7.0	0.5	" 61- 1	송면백	
12	" 62- 2	"	9.0	1.0	" 62- 2	김광섭	
13	" 63- 2	"	21.0	1.0	" 63- 2	이진재	
14	" 70- 1	"	8.87	1층 1.0 2층 1.0	" 70- 1	김주석	
15	" 78- 1	"	16.30	2.5	" 78- 1	이수거	
16	" 78- 2	"	12.36	1.0	" 78- 2	정철오	
17	" 79- 7	"	18.36	1.0	" 79- 7	김철호	
18	" 79- 8	"	15.92	1.8	" 79- 8	장용익	

순 위	소재지	구 보	총 평수	수 용 평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9	계동 79-6	목조와즙	17.0		계동 79-6	한이씨		
20	" 82-1	철근영육개	39.86	0.9	" 82-1	김수씨		
21	" 120-1	목조와즙	17	2.0	" 120-1	조창현		
22	" 129-2	연와조	1층 13.20 2층 16.70	1.5	" 129-2	이종욱		
23	" 131-2 131-3	목조와즙	지하 5.72	1.2	" 131-2	허완형		
			1층 15.63	1.2				
24	" 10	"	2층 13.4	3.0	" 10	이영희		
			8.0					
25	" 133-6	새부스라브	1층 35.04	2	" 133-6	임의혁		
			2층 35.04					
26	" 19-2	연와조	1층 8.18	2	" 19-2	박인택		
			2층 8.18					
			3층 0.3					

예
규

서울특별시 농가대여 양곡결손처분
사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5. 10. 16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에규제 309 호

서울특별시 농가대여양곡결손
처분사무처리요령

제 1 조 (목적) 본 요령은 농가대여 양
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의 결손처분 사무의 신속
정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대여양곡의 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법 및 서울특별시
대여양곡 결손처분 심사위원회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본 요령에 의한다.

제3조 (대상) 대역양곡의 결손처분대상은 법률공포일인 73.6.15일 이전에 대역한 양곡으로서 회수 불가능한 양곡으로 한다.

제4조 (공고) 구청장은 (출장소장포함) 다음사항을 기재한 농가대역양곡결손처분내용을 동사무소 및 구·출장소 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동장을 통하여 미상환농가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1. 감면대상 양곡의 수량
- 2. 감면대상자 범위
- 3. 신청 마감 년월일
- 4. 신청방법

제5조 (결손처분 신청) 법부칙 제2항의 결손처분 대상자로서 결손처분을 받고자하는 주 제무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제2, 3, 4호 서식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동장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 검토후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2부작성) 시장에게

제출한다. 주 제무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여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동장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공부와대조) 동장은 결손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 상이여부를 공부와 대조한후 대조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의처리)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지체없이 농가대역 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감면처분과 통지) 위원회의 결손처분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결손처분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출장소장포함) 통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신청서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귀하

1.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감면 신청량 (정곡)

대 년 월 일	목 종	요상환량			상환량	미상환량	감면신청량			공 부 대 조 필
		원곡	미곡	계			원곡	미곡	계	

3. 신청사유

가. 상환 재력 부족

나. 행방불명

다. 사망자로서 재산 상속인이 없음.

라. 사망자로서 재산 상속권 포기

농가대여 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농가대여 양곡 결손처분을 신청합니다.

주 채무자와의 관계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①

<별지 제 2 호 서식>

상 환 무 능 력 자 증빙 서

1. 주 채무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세대원수

3. 명 재산상태

가		토				지	기	타	주	민	세																
종	류	종	류	면	적	생						년	수	확	관												
전	경	종	류	면	적	생	년	수	확	관	조	목	년	수	입	합	부	과	여	부							
제																					수	민	세	부	과	여	부

4. 재산경도 (이 란은 동장이 해당란에 O표를 기입함)

상, 중, 하

출원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실이 상위·없음을 증명함.

19 년 월 일

X X X 동 장

Ⓢ

위의 사실을 확인함.

19 년 월 일

△ △ △ 구청장

Ⓢ

<별지 제 3 호 서식>

행 방 불 명 자 증 명 서

1. 주 체 무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행 방 불 명 의 기 간 및 종 류

행 방 불 명 년 월 일	신청일 현재 기 간	종 류 (전 출 전 시 불 명 기 타)

출 원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실이 상위 없음을 증명함.

19 년 월 일

× × × 동장

②

위의 사실을 확인함.

19 년 월 일

× × × 경찰서장

②

<별지 제 4 호 서식>

계 산 상속 증명서

1. 주 채무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망 및 상속 상황

사 망 년 도

계 산 상속 인 유 무

무 포 기

출 원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실이 상위 없음을 증명함.

19 년 월 일

X X X 농장

①

위 사실을 확인함.

19 년 월 일

X X X 구청장

②

<별지 제5호 서식>

결손처분승인신청서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귀하

다음과 같이 농가대여 양곡을 결손처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성명	신청자 주소	감면신청량								사유	
		대여년도	곡종	감면신청수량			승인신청수량				
				원곡	미곡	계	원곡	미곡	계		
총계											

○, ○ 구청장

㉞

별지 제 6 호 서식

결 손 처 분 통 지 서

19 년 월 일

귀 하 .

1. 주 채 무 자 주 소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2. 결 손 처 분 량

대 여 년 도 분	목 종	미 상 환 량	신 청 량	처 분 량	요 상 환 량

위 와 같 이 결 손 처 분 하 였 음 을 통 지 함 .

○ ○ ○ 구 청 장



경찰 경비부서 인사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10. 14.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에규제 310 호

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

제 1 조 (적용) 경비부서요원의 전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경비부서 및 복무기간) ① 경비부서별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청와대경비대 : 서울출신자 1년
타시도전입자 1.69년
- 2. 22 특경대 : 2년
- 3. 제 2기동대 : 2년
- 4. 기 마 대 : 2년
- 5. 전 경 대 : 1년
- 6. 검 문 소 : 9월
- 7. 기 동 대 : 6월
- 8. 국회경비대 : 6월
- 9. 중앙청경비대 : 6월
- 10. 경찰국상황실 : 6월
- 11. 경찰국 통신과 지령실 및 경보센터 : 6월

12. 경찰국 자책경비대 : 6월

13. 국무총리공판경비대 : 6월

14. 군기관 파견 : 6월

② 그 복무기간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일반부서로 전보된자는 다시 그 잔여 기간의 복무를 필하여야 한다.

③ 다만 그 사유가 직제의 개편, 인원의 감축등 개인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복무한 때에는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순위명부의 작성)

① 순위명부는 매년 10월 1일과 4월 1일 현재로 2회 작성한다.

② 순위자 명부에의 등재는 경사이상은 45세, 경장이하는 40세 미만자로 한다.

③ 순위자 명부에의 등재순위는 계급별로 경비부서 복무를 필한 년월일 순으로 하되 같은 때에는 연령에 따라 연상자를 우선 등재한다.

④ 서울시경으로 신규 전입하여 일반부서로 배치된자

(이하 타시도 전입자라 한다.)
는 그 전입 일자를 경비부서 부
부필 일자로 간주한다.

⑤전투경찰대, 청와대경비대 부무원
필한 자는 기동대동 6월 부부
경비부서를 순서에 따라 당해 계
급에서 2회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⑥승진조건이 아닌자로서 타시도에
전출하여 전경대 지원 부무를 필
한자는 당해계급에서는 경비부서에
차출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경비부서의 차출) ①경비부
서 요원의 차출은 순위자 명부에
등재된 순에 의한다.

②명부에 등재된 자는 차출일 현
재 년령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경비부서 차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③전경대요원의 차출은 당해 지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임용일자가
같은 때는 연소자를 우선 차출하
고 특수자격을 요하는 경비부서

요원의 차출은 순위자 명부 순에
의하되 명백한 기준을 정하여 적
격자만을 순차로 인사위원회에서
엄선한다.

④경비부서 차출 유보부서에 근무
하던 자가 차출 대상부서로 전보
된 때에는 작성된 순위자 명부순
에 의거 우선 차출한다.

제 5 조 (경비부서 차출 유보부서)

①다음부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
여는 정원 (임시정원 포함한다) 의
범위내에서 차출을 유보한다.

1. 경찰국 경비과
2. " 작전과 작전계의 기량
및 무기장비요원
3. 경찰국 정보과 2계, 3계 5계 및
계중요원
4. 경찰국 의사과 3계
5. " 수사과 감식요원
6. " 형사과 수법 및 현장
감식요원
7. 경찰국 교통과 교통정보센터,
안전재교통관리요원 (3명)

8. 기동경호 요원

9. 공항경비대 요원

10. 경찰국장 및 1, 2 부국장
부속실요원

11. 특기요원 (차드사, 필경사, 모
필사, 사진사, 통역요원)

12. 통신경과를 가진 통신요원

13. 경찰서 정보과 2계, 3계 및
재증요원

14. 경찰서 수사과 감식요원 (2명)

15. 경찰서 경비과 경호전담요원

16. 타기관 파견자 (경찰국에서
정식파견 발령자)

②경비부서 차출 대상자를 차출유보
부서에 전보할 때에는 사전에 경
찰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경비부서 차출 보유자) ①

공상, 전염성질병, 기체부자유자등
그 증상이 공인되어 경비부서 부
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명시하여 차출을
보류한다.

②경비부서의 차출을 면 할 목적

으로 차출 보류신청을 한후 계속
하여 경비부서 근무를 기피할 때에
는 관계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 7 조 (차출 보유자의 공개) 전조
에 의하여 경비부서 차출을 보류
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보 발령과 함께 공개
한다.

제 8 조 (차출 일련번호) 경비부서의
차출발령은 년도별, 계급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제 9 조 (복무만료자 복귀) ①경비부서
복무 만료자는 원소속이 복귀한다.
다만, 경위 이상과 원소속이 경찰국
으로서 후임자 보충을 한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희망지
2. 주거지
3. 주거 인접지
4. 기타 결원많은 부서

②전투경찰대 복무를 필한자에 대하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 내에서 배치한다. 그러나, 타도시에 진출하여 전경대 지원 복무를 필한자는 전항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희망부서에 배치한다.

제 10 조 (개정절차) 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경찰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서 근무중인 자가 소정의 복무 기간을 만료하였을 때에는 경비부서 복무원자도 본다.

③ (폐지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267 호 (72.2.14) 인사관리 지침및 경무 200-14983 (75.4.26) 경비부서 인사관리 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사 령

© 1975.10.14

강희수

별정직 3급 상당에 임함.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조성용

별정직 3급상당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아동과 지방행정사무원 이경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제장에 포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사무원 하영기

보건예방과 마약제장에 포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행정사무원 성정남

중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성북구보건소 지방행정사무원 임태승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관계과 지방행정사 김재종

새마을지도자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별정직3급 상당)

본인 임용포기도 75.9.15자 신

규 임용 (발령호수 557 호)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구과 지방행정사 이종인

중구 근무를 명함.

◎ 1975.10.15

은평출장소 지방보건원 권순경
 지방수의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농정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보건원 조현
 지방수의원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축산물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행정사	이선호
시민과	지방행정사	주원진
시민과	지방행정사	김흥기
시민과	지방행정사	유구현
시민과	지방행정사	심우보
시민과	지방행정사	정광모
시민과	지방행정사	최태홍
시민과	지방행정사	이근수
시민과	지방행정사	최정대
시민과	지방행정사	유희열
시민과	지방행정사	이원대

운수3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시 민과와전중) 행정주사보 이우락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운수3과 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행정사	김자
시민과	지방행정사	전봉숙
시민과	지방행정사	김명자
시민과	지방행정사	유정열
시민과	지방행정사	정경숙
시민과	지방행정사	홍순주

운수3과 근무를 명함.

개량1과 지방행정사 신상욱

성북구 지방행정사 김환모

공업과 지방행정사 김기연

지방행정사 이기연

시민과 근무를 명함.

지방노동위원회 지방행정사무원 고명도

행정사무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보함.

서대문구 행정사무관 박종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1975.10.16

강남구보건소 지방의무 과시보 김명근
본인 미부임으로 인하여 75.10.1
(발령제 691 조) 자 발령을 동일
자로 취소함.

◎1975.10.17

관제과 지방행정사 박양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제1.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관제과 지방행정사 이윤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관제과 지방행정사 하갑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각봉
6월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김태수
총무과(제2부시장실) 파견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행정사무관 김창실
경직(서무과 서무계장)을 명함.

◎1975.10.18

중부병원 지방약무과 최갑배
동부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과 정동연
영등포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동부병원 지방약무과 이하봉
중부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정신병원 지방약무과 윤준식
아동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영등포병원 지방약무과 이병수
정신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아동병원 지방약무과 손기성
서대문병원 약제과장에 포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의무과 박보훈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에 포함.

연로시험소 지방행정사 박봉일
군수3과 등록계장에 포함.

중구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익
연로시험소 소장에 포함.

의약과 지방약무과 기사보 임경수

시민과 근무를 명함.

농 경 과	지방축산 기 사 보	이 형 영	서 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사 보	김 정 봉
시민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수확담당관	지방행정 지 주 사 보	김 선 범	종 로 구	지방토목 기 사 보	유 지 중
관 광 과	지방행정 지 주 사 보	유 상 철	중 구 근무를	명함.	
공 업 과	지방행정 지 주 사 보	소 근 식	동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사 보 시 보	서 강 천
개 량 1 과	지방행정 지 주 사 보	이 대 영	단속과 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 지 주 사 보	남 찬 희	동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사 보 시 보	허 찬 옥
시민과 근무를	명함.		단속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공덕2동	지방행정 지 서 기 보	이 승 순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 기 사 보	김 규 영
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10호봉을	급함.		관 악 구	지방토목 기 사 보	엄 판 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② 1975.10.20			동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서 강 범
단 속 과	지방토목 기 사 보	박 주 병	종로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이 민 희
단 속 과	지방토목 기 사 보	신 흥 섭	도봉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김 대 근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 사 보	문 순 한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김 유 석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 사 보	이 수 복	중 구 근무를	명함.	
시설과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윤 재 경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 사 보	정 지 교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강 명 준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 기원보	민성기	종로구 지방농림 기사보	이규영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건축 기사보	이달섭	종로구 지방농림 기원보	이성수
종로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건축 기원보	박기현	성동구 지방축산 기사	최연희
성북구 근무를 명함.		축산물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	
은명출장소 지방건축 기사보	이무웅	도봉구보건소 지방약 기원	김광년
강남구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강남구 지방건축 기원보	박영대	의약과 지방약무 기원보	이순수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기계 기사보	홍대기	지하철본부 지방전 기원	한철수
기전과 근무를 명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기계 기원	이명수	영등포구 지방지적 기원보	이상술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전 기사	유정현	관악구 지방토목 기사보	이덕창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전 기사보	백구현	운영과 지방통신 기사	정택길
종로구 근무를 명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전 기원보	유대열	시민과 지방행정 기사	김규명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예산담당관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전 기원보	최교락	은명출장소 지방행정 기사	민을식
성동구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검소	지방행정사	안병조	13호봉을 규합.
연로과 근무를	명함.		아동과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사	민경태	연로시험소 지방행정사보 김위태
성동구 근무를	명함.		도시행정과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사	정용성	대현삼배 수지사사무소 지방행정사보 한상은
성동구 근무를	명함.		주력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사	이희관	서대문구 지방행정기 강성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사	서윤석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윤영식
성동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연영희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문경동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6호봉을 규합.			영등포구 지방행정기보 김영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사	김문상	용산구 지방행정기보 박춘규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남부부녀 보호지도소	지방행정사	엄주용	경생원 지방행정기보 이원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사	이인식	도봉구 지방행정기보 이순일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사보	안극수	마포구 지방행정기보 정대원
기획담당관 근무를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양정과 행정주사보	임상화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김상기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p>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p>	<p>오종익 김동임</p>
<p>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지방행정주사시보에 임함.</p>
<p>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기보</p>	<p>배광목 1호봉을 급함.</p>
<p>중구 근무를 명함.</p>	<p>강남구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행정 사무기보시보</p>	<p>김길송 지방행정주사 시보에 임함.</p>
<p>중구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노동위원회 행정주사 사무국</p>	<p>이동식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지방행정주사 에 임함.</p>	<p>조성희 지방행정주사 시보에 임함.</p>
<p>9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순환담당관 근무를 명함.</p>	<p>남부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p>	<p>이규환 이영재</p>
<p>아동과 아동시설제장을 보함.</p>	<p>지방행정주사 시보에 임함.</p>
<p>강남구 지방농림 사무기</p>	<p>지병진 1호봉을 급함.</p>
<p>지방행정주사에 임함.</p>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12호봉을 급함.</p>	
<p>연로과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p>	